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뇌연구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뇌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「뇌연구 촉진법」이 '23.10.31. 개정된 바, 제12조의2제3항 및 제18조의 제3항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, 포상의 선정기준,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규정(안 제15조의3 신설)

- 1)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규제자문단의 구성·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함

나. 포상 관련 세부사항 규정(안 제20조 신설)

- 1) 법 제18조의제3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 및 뇌산업 발전 포상 실시를 위해 포상의 종류,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4. 1. 3. ~ 2. 13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3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규제 발굴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병원, 규제 관련 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규제자문단은 공동 단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공동 단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

④ 규제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뇌연구 및 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
⑤ 뇌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은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규제자문단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 검토를 신

청할 수 있다.

⑥ 규제자문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, 전화조사,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기술혁신과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⑦ 규제자문단은 제6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1.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·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
2.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
3.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
4. 그 밖에 규제자문단의 단장이 해당 규제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⑧ 규제자문단은 제6항에 따라 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안을 「생명공학육성법」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(이하 심의회)에 보고해야 한다.

⑨ 심의회는 제8항에 따라 보고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·의결한다.

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해당 규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0조(포상의 실시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·연구기관·기업·병원 및 개인을 선정하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 1.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자 2. 뇌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기준,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5조의3(규제 발굴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해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병원, 규제 관련 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규제자문단은 공동 단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 <u>③ 공동 단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.</u> <u>④ 규제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.</u> <u>1. 뇌연구 및 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</u> <u>2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</u>

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
⑤ 뇌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은 연구개발, 시험·평가,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규제자문단에 대해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 개선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.

⑥ 규제자문단은 제5항에 따른 신청, 전화조사,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기술혁신과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⑦ 규제자문단은 제6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1. 규제개선 신청 내용의 구체성·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
2.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
3.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
4. 그 밖에 규제자문단의 단장이 해당 규제의 검토에 필요

<신 설>

하다고 정하는 사항

⑧ 규제자문단은 제6항에 따라
발굴한 규제 및 마련된 개선방
안을 「생명공학육성법」 제6
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
의회(이하 심의회)에 보고해야
한다.

⑨ 심의회는 제8항에 따라 보고
받은 규제 및 개선방안을 심의
· 의결한다.

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9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
한 규제 및 개선방안을 해당 규
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
에게 통보해야 하며, 통보를 받
은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
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에 따
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
록 노력해야 한다.

제20조(포상의 실시 등) ① 과학
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
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·연
구기관·기업·병원 및 개인을
선정하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할
수 있다. 1. 뇌연구 촉진에 이바

지한 자 2. 뇌산업 발전에 이바
지한 자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관
련 기관·법인·단체로부터 그
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기
준,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등에
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
말까지 공고해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556